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9일, 서삼석의원 등 2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2024.9.12.)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2024.11.2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차 안전조정위원회(2024.11.2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삼석의원)

농·수산업은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명산업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오며 헌법에도 농·어업을 보호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가차원의 중요한 산업임.

최근 기후위기를 비롯한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하여 유류를 비롯한 물가가 상승하여, 전반적인 생산비도 증가하며,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함. 이에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여 가격하락을 유도하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며 농어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는 단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농어민의 이탈을 야기하여 생산자가 부족하여 결국 식량안보 위협까지 직결될 수 있음.

이를 위해 미국과 EU는 일부 품목을 선정하여 목표가격을 선정한 후 부족한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현 정부는 경제성 논리로만 일관하며 반대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농수산물 중 주요 품목을 선정하고 목표·기준가격을 고려하여 그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별도의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나아가 국가 식량안보를 확립하려는 취지임(안 제16조의2 및 제57조제2항제5호 신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개정안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간의 차액 보전 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미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타 개정안과 유사하므로,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다만, ① 계약거래지원제도 도입, ② 수매 대상 품목의 확대, ③ 상한가격 예시의 근거 마련, ④ 농산물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추가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6. 안전조정위원회 심사내용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 주철현)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조정안으로 의결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7.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 8.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